

## 【 12 】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5. 5. 10.

제출자 : 양주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며,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중단되어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방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제9조 내지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내지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9조)
- 나. 임대주택 보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 및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감면확대(안 제12조)
- 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반영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중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 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

양주시조례 제 호

##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중 “재산세 ·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호중 “건축물로서” 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을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으로 한다.

제11조중 “1,000분의 3” 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

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로, 같은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한다.

제17조 제명중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 을 “시장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며, 같은조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로, 같은조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한다.

제20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를 삭제한다.

제22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의2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을 “재산세”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주거용건축물” 을 “주택”으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한다” 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같은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같은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제5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제7조제1호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같은조제2호중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같은조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같은조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같은조제7호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 육성법」”으로, 제8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제9조 각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를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같은조제1항 각호중 “농어촌 정비법”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법」”으로, “오지개발 촉진법”을 “「오지개발 촉진법」”으로, 같은조제2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제11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3조제1항중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을 “「농어

· 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을 “‘농수산물가공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같은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같은조제3항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15조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15조의2증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조제1항중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같은조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8조증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19조증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제20조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21조증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22조증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제23조 본문 및 각호증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23조의2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24조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25조증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제26조제1항 내지 제2항 중 “향교재산법”을 “‘향교재산법’”으로, 제28조 및 제30조증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항, 제17조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 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 ----- ----- ----- <u>재산세</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 <u>주택</u>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u>재산세</u> -----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u> 와 <u>종합토지세</u> 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u>재산세</u> ----- -----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 <u>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u>·<u>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7.(생략)</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u>재산세</u>·<u>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생략)</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u>건축물</u>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u>주거용부동산</u></p> <p>3. (생략)</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 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p>	<p>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p> <p><u>재산세</u> --</p> <p>1. ~ 7.(현행과 같음)</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p> <p><u>재산세</u> --</p> <p>1.(현행과 같음)</p> <p>2. ----- <u>건축물</u> 및 주택으로서 ----- <u>부동산</u></p> <p>3.(현행과 같음)</p> <p>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p>

현 행	개 정 안
<p>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1. ~ 3.(생략)</p> <p>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 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하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재산세</p> <p>1. ~ 3.(현행과 같음)</p> <p>②</p> <p>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재산세</p>
<p>제1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조의 규정</p>	<p>제1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p>

현 행	개 정 안
<p>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u>1,000분의 3</u>을 적용한다.</p>	<p>----- ----- <u>1,000분의 1.5</u> ----- -----</p>
<p><u>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u></p>	<p><u>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u></p>
<p><u>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u></p>	<p><u>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u></p>

현 행	개 정 안
<p><u>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u></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p>	<p><u>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p>

현 행	개 정 안
	<p>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u>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u>최초로</u>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까지</p>	<p>2. <u>시장정비사업시행</u></p>
<p>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u>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p> <p>재산세</p>
<p>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u>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제19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p> <p>재산세</p>





현 행	개 정 안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 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u> 와 <u>종합토지세</u> 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 ----- ----- <u>재산세</u> ----- ----- ----- ----- ----- ----- -----.
제23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 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 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재산세</u>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u>종합토지세</u> <u>과세표준액</u>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 ----- ----- ----- ----- ----- ----- <u>재산세</u> ----- ----- ----- ----- ----- ----- -----.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 ----- ----- ----- ----- -----.

